

# 감사원

## 심사결정

분류번호 2018-심사-459

제목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

청구인 A

전라북도 □□시

대리인 노무법인 ■■ 담당 공인노무사 B

처분청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장

주문 처분청은 2015. 12. 31. 청구인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2015. 5. 3.부터 2015. 8. 12. 사이 취업내역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취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
### 이유

#### 1. 원 처분의 요지

가. 청구인은 2015. 3. 23.부터 2015. 3. 26.까지 주식회사 ○○ “●●공장<sup>1)</sup> 공장 동 내·외부 개·보수공사”(이하 “이 사건 공사”라 한다) 현장에서 설비 철거 작업 중 설비에 남아있던 수은에 노출되는 사고(이하 “이 사건 사고”라 한다)로 2015. 10. 27. “중금속의 이상 요수치”(급성수은중독, 이하 “이 사건 상병”이라 한다)를 진단받았다.

---

1) 광주광역시 △△구 소재

나. “가항”의 진단에 따라 청구인은 2015. 10. 27. 처분청에 휴업급여(기간: 2015. 3. 27.~10. 27.)를 신청하였으나, 처분청은 2015. 11. 17. 신청기간 중 청구인이 체내 수은량 검사를 위하여 병원을 다닌 2015. 8. 13.(이하 “수은검사일”이라 한다) 이후 (기간: 2015. 8. 13.~10. 27.)의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.

다.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. 12. 10. 처분청에 미지급기간(2015. 4. 1.~8.12.)의 휴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, 처분청은 2015. 12. 31. 청구인의 체내 수은량과 요양 및 취업내역을 감안한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미지급기간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일부기간(2015. 4. 1.~5. 2.)의 휴업급여는 추가 지급되어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기간(2015. 5. 3.~8. 12., 이하 “이 사건 부지급 기간”이라 한다)의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(이하 “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”이라 한다)하였다.

## 2.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

### 가. 청구 취지

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.<sup>2)</sup>

### 나. 청구 이유

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(이 사건 상병 진단 기준 청구인 포함 계 12명<sup>3)</sup>, 이하 “이 사건 재해자들”이라 한다)은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 등의

---

2) 대리인 노무법인 ■■ 담당 공인노무사 B이 청구인 등 9명에 대해 1건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, 심사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청구인이 모두 다르므로 9건을 각각 심사결정하는 것임

3) 청구인, 청구 외 C·D·E·F·G·H·I·J·K·L·M이며 이 중 앞에 9명이 감사원 심사청구

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이 사건 사고가 위 증상의 원인임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을 적시에 진단받지 못한 것으로, 청구 외 C 및 K의 주치의인 N(▲▲병원)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이 아니라 관련 전문의가 이 사건 재해자들 각각의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최초 진료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일자로 요양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이 사건 재해자들 중 5명(청구 외 F, G, H, I, K)의 주치의인 O(▷▷병원)도 이 사건 재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상병 진단의 자연이 이 사건 재해자들의 잘못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요양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감안하면,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급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양(재가요양) 중이었다고 보아야 하고, ②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노출 이후 점차 체내 수은량이 낮아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수은검사일 이후의 휴업급여는 지급하고 그보다 체내 수은량이 높은 이 사건 부지급기간의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므로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.

### 3. 우리 원의 판단

#### 가. 다툼

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지급기간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.

#### 나. 인정 사실

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1) 청구인은, 주식회사 ○○의 하수급인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►►

에 2015. 3. 23. 일용직으로 고용되어, 이날부터 같은 해 3. 26.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.

2) 청구인은 “1)항”의 내용과 같은 증상으로 [표 1]과 같이 2015. 3. 30.부터 2015. 4. 13. 사이 의료기관 2곳을 방문하였으나 2곳 모두 이 사건 사고가 위 증상의 원인임을 알지 못하여 “상세불명의 가려움” 등으로만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.

[표 1] 이 사건 상병 최초진단내역

의료기관명	방문일	진단명
▽▽이비인후과	'15. 3. 30.	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
▼▼피부과	'15. 4. 2., 4. 3., 4. 13.	상세불명의 가려움

3) 청구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“2)항”의 내용과 같은 의료기관 방문 이후 따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다가, 이 사건 재해자들 중 청구 외 K이 2015. 7. 27. ◇◇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, [표 2]와 같이 수은검사일인 2015. 8. 13.에 ◇◇병원을 방문하여 체내 수은량 검사를 받고 2015. 10. 27.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.

4) 한편, 청구인은 2015. 10. 27. 처분청에 휴업급여(기간: 2015. 3. 27.~10. 27.)를 신청하였고, 이에 처분청은 2015. 11. 17.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개최하였는데 자문의 6명 모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5) 그런데 처분청은 2015. 11. 17. “4)항”의 내용과 같은 신청기간 중 수은검사일인 2015. 8. 13. 이후(기간: 2015. 8. 13.~10. 27.)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기로 하였고, 이에 청구인은 2015. 12. 10.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중 2015. 4. 1.부터 2015. 8. 12.까지의 휴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였다.

6)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. 12. 31. 청구인의 체내 수은량과 요양 및 취업내역을 감안한 자문의 자문을 거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일부기간(2015. 4. 1.~5. 2.)의 휴업급여는 추가 지급하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부지급기간(기간: 2015. 5. 3.~8. 12.)의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.

7)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 인지 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은 [표 2]와 같다.

[표 2] 이 사건 상병 인지 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

구분 (의료기관명)	내용	일자
외래초진기록지 (△△병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C/C: 체내 수은량 검사</li><li>▶ P/I: 이 사건 사고로 잠깐 의식을 놓았었고, 그 이후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일어나곤 했으며 지금도 가끔씩 그러함, 잠을 끊 자지 못함</li></ul>	'15. 8. 13.
소견서 ,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(△△병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상병명: 중금속의 이상 요수치</li><li>▶ 체내 수은량 검사 결과 요중 수은수치 <math>18.567 \mu\text{g}/\text{L}</math>, 혈중수은수치 <math>4.970 \mu\text{g}/\text{L}</math>로 중금속 취급자가 아닌 사람 기준으로는 증가 소견이었음. 현재는 가려움 증상만 있다고 하며 지속적 진료 요망</li><li>▶ 통원: '15. 8. 13.~10. 27., 사유: 폭로된 중금속 확인</li></ul>	'15. 10. 27. '15. 10. 30.
산업재해보상보험 지문의 소견서 (처분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의학적 소견: 요양시점은 이 사건 상병 증상이 가장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사 근무 종료 시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</li><li>▶ '15. 3. 30.~4. 13.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나 이후 3개월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'15. 5. 3. 이후 취업내역이 있으므로 1차적 노동력 상실기간은 '15. 5. 2.까지로 판단됨</li><li>- ‘직업의학 교과서’<sup>1)</sup>에 따르면 요중 수은이 <math>75 \mu\text{g}/\text{g Cr}</math><sup>2)</sup> 이상일 때 직업적 노출을 종단하도록 되어 있는데, '15. 5. 3. 경은 청구인의 요중 수은수치가 <math>75 \mu\text{g}/\text{g Cr}</math> 이하일 것으로 판단됨</li><li>- 결론: '15. 4. 1.~5. 2. 휴업급여 신청은 합당</li></ul>	-

주1: Joseph LaDou와 Robert J. Harrison 공저, 'Current Diagnosis & Treatment: Occupational & Environmental Medicine, 5th Edition'(2014)

주2: 소변은 크레아티닌(creatinine) 비중에 따라 지나치게 농축되거나 묽은 경우가 있어 요증 물질농도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이 필요한데, 그 보정 전 요증 물질농도 측정 단위가  $\mu\text{g}/\text{L}$ 라면, 보정 후 측정 단위는  $\mu\text{g}/\text{g Cr}$ 으로 표현됨(크레아티닌 보정 농도=보정 전 측정농도/크레아티닌 농도)

8) 이 사건 재해자들 중 일부의 주치의 의견서 및 문답서는 [표 3]과 같다.

[표 3] 이 사건 재해자들 중 일부의 주치의 의견서 및 문답서

구분	내용	일자
(15년 9월 현재 청구인 및 청구 외 K의 주치의) 의견서  (▲▶병원 직업환경의학과 N <sup>※</sup>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청구 외 C 및 K에 대한 진료경험에 따라, 또한 현 근로복지공단 ◀◀지사 자문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것임</li><li>이 사건 재해자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 하여도 한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지 못하였는데, 이러한 경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가 이 사건 재해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여, 이 사건 상병 관련 증상으로 최초 진료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날을 요양 기간의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</li></ul>	'15. 12. 23.
(16년 3월 현재 청구 외 F, G, H, I, 소진원의 주치의) 문답서  (▷▶병원 직업환경의학과 O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이 사건 재해자들은 기체로 증발된 수은을 폐로 흡입하였고, 이는 소변·대변으로 약 2~3개월의 반감기로 배출되므로 이 사건 재해자들의 체내 수은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최고 노출 수준에서 점차 감소</li><li>'15년 10월경 이 사건 재해자들 몇몇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, 그 중 일부는 체내 수은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감소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, 나머지는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 중이며, 주요 증상은 수면장애, 근육통, 사지 감각 이상 등임</li><li>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식중독이나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고 특이 증상이 없어 수은 노출 여부를 모르는 경우 의사들도 진단하기 어려우며,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대부분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그 증상이 호전됨</li><li>독일연방 환경청 소속 인체모니터링 위원회 기준으로 요증 수은수치 <math>7\mu\text{g}/\text{L}</math>는 무시해도 되고, <math>25\mu\text{g}/\text{L}</math>는 어린이·노약자 등 민감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값인데 크레아티닌 보정 값은 각각 <math>5, 20\mu\text{g}/\text{L Cr}</math>이 기준으로, 일단 위 기준을 임상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판단</li><li>청구 외 K은 약 14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실에서 철거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 초기 요증 수은수치 추정치는 가장 높은 수준인 <math>174\mu\text{g}/\text{L}</math>이며, 나머지 사람들은 종사기간과 작업 방식에 따라 그 수치 추정치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</li><li>이 사건 상병은 일반 질환과 달리, 원청업체가 수은 노출 정보를 주지 않아 진단이 지원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요양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</li></ul>	'16. 3. 21.

주: 전 ◇◇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

9) 한편, 2018년 6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‘취업 및 영업확인’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급기간 2015. 5. 9.부터 5. 19. 사이 8일, 2015. 6. 10.부터 6. 24. 사이 12일, 계 20일 동안 일용근로한 것으로 되어 있다.

#### 다. 관계 법령 등

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2조 등 [별지] 기재와 같다.

#### 라. 판단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, 「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」(2012. 11. 15. 근로복지공단 지침 2012-50호)에 따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어야 하는데, 그 요양이란 입원, 통원, 재가요양을 포함하는 개념이고, ②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,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, ① 인정사실 “4)항”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6명 모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, ② 인정사실 “8)항”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

재해자들 일부의 자문의인 N과 O는 이 사건 재해자들의 요양시점을 이 사건 상병 관련 최초 진료가 있었던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, ③ 인정사실 “7)항”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 자문의 또한 청구인의 요양시점을 이 사건 상병 증상이 가장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사 근무 종료 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, 늦어도 이 사건 공사 근무 종료 후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료 시점이 그 요양시점으로 판단된다.

그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급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, ① 인정사실 “2)항”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상병 진단의 자연이 청구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점, ② 인정사실 “7)항”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급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있었다고 추정되나, 증상의 원인을 알지 못하여 제대로 통원 및 입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 기간에도 재가요양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, ③ 인정사실 “7)항” 및 “8)항”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급기간의 체내 수은량이 수은검사일 이후의 체내 수은량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지급기간 취업이 가능한 치유 상태라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지급기간은 요양(재가요양)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.

한편,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노출 이후 점차 체내 수은량이 낮아지고 증상이 완화

되는 특성이 있는데 수은검사일 이후의 휴업급여는 지급하고 그보다 체내 수은량이 높은 이 사건 부지급기간의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.

다만 인정사실 “9)항”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지급기간 동안 청구인의 취업 내역이 ‘취업 및 영업확인’에서 일부 확인되는데, 실제 취업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.

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급기간 실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가 미진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「감사원법」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. 7. 12.

[별지]

## 관계 법령 등

### 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- 제52조(휴업급여)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,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 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

- 제42조(자문의사)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·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(공단의 직원인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)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(이하 “자문의사”라 한다)의 자격과 위촉·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
- 제43조(자문의사회의)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·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.  
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  
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(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)
2.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원 요양 사유의 타당성

3.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
  4. 제118조 제4항 단서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
  5. 그 밖에 보험급여·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

○ 제21조(요양급여의 결정 등) ①~② (생략)

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□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제8조(사업의 일괄적용)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.

1.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
  2.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
  3.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
- (이하 생략)

□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○ 제6조(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)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
- (이하 생략)

## □ 「감사원 심사규칙」

- 제12조(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)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.  
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.

## □ 「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」(2012. 11. 15. 근로복지공단 지침 2012-50호)

### IV. 휴업급여 지급요건 및 업무처리방법 등

#### 가. 휴업급여 지급요건

-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임
-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은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였어야 하고, 그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

##### 1) 요양사실이 있어야 함

-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어야 하며 그 요양이란 입원, 통원 및 재가요양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임

※ 재가요양기간이란 상병의 특성 및 그 경과상 재가요양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

##### 2)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여야 함

-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
  - 진료계획과 연계, 상병의 정도나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, 요양방법,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취업가능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

- “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”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하고
  -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,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임
- 요양기간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,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,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※ 휴업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 뿐만 아니라 상병상태 확인 등을 통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

### 3)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함

-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
  - 만약, 사업주가 그 기간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그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면 휴업급여를 사업주에게 대체지급하여야 함

※ 사업주 지급 금품의 성격에 있어 보험급여 대체금품 여부 판단 필요